

리스크관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1. 이 규정은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회사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리스크"라 함은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이 회사의 가치에 불리한 결과 또는 손실을 초래할 잠재적 가능성을 말하며,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로 구분된다.
 - ② "비재무 리스크"라 함은 기술 윤리 리스크, 이용자 보호 리스크, 프라이버시 리스크, 정책 및 규제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정보보안 리스크, 윤리 리스크, 평판 리스크, CI(Corporate Identity) 리스크, PI(Personal Identity) 리스크, 대외 환경 리스크, 인권 리스크, 환경 리스크를 포함하여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발생 가능한 준법, 기업·기술·서비스 윤리, 인력, 사업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 ③ "재무 리스크"라 함은 금리, 유동성, 신용, 외환, 자본, 재무보고, 내부회계관리, 세금 등 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정보 보고체계, 세무 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 ④ "리스크관리"라 함은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재무 리스크 혹은 비재무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인식, 측정, 분석, 검토, 감시, 점검, 처리, 대응, 관리, 통제 및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⑤ "기술 윤리 리스크"라 함은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기술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 ⑥ "이용자 보호 리스크"라 함은 기술적 결함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용자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 ⑦ "프라이버시 리스크"라 함은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이용자 정보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과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위험을 말한다.
- ⑧ "정책 및 규제 리스크"라 함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각 소관 정책과 규제로 인하여 기존 사업 활동, 경영수행, 신규사업의 진출 등 기업활동 전반에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 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라 함은 직·간접적으로 재무적 책임, 민·형사상 불이익, 규제당국의 제재 또는 기타 조직이나 임직원에게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적용 법령, 규정, 계약, 표준 또는 내부 정책의 위반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을 말한다.
- ⑩ "정보보안 리스크"라 함은 서비스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어뷰징(Abusing) 활동, 시스템 대상 악의적 해킹 공격,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 ⑪ "윤리 리스크"라 함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크루 또는 파트너사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 ⑫ "평판 리스크"라 함은 회사의 경영부진, 사회적 물의 야기, 민원발생, 중대한 소송 등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 및 대외 이미지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 ⑬ "CI(Corporate Identity) 리스크"라 함은 회사의 상호, 명의, 상표, 평판, 신용 등을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 ⑭ "PI(Personal Identity) 리스크"라 함은 회사 임원, 크루 및 기타 회사 구성원의 사회적 물의 야기,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소송 발생 및 기타 공동체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 ⑮ "대외 환경 리스크"라 함은 전염병, 전쟁, 테러,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대외 환경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 ⑯ "인권 리스크"라 함은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 ⑰ "기후변화 및 환경 리스크"라 함은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의한 기후 위기로 인하여 초래되는 위험, 기후 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비롯한 기후 변화 대응 및 그 과정에서의 각종 정책·규제 변화로 인한 위험 등 기후변화 및 환경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위험을 말한다.
- ⑱ "임원"이라 함은 회사의 등기 및 미등기 임원을 의미한다.

2. 기타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기타 내규 등을 따른다.

제 3 조 (리스크관리 기본원칙 및 대상)

- 1. 리스크관리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리스크관리는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② 리스크의 적정한 분산 및 허용한도의 설정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리스크관리는 전사적 차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④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기획·운영 전 단계에 걸쳐 리스크는 소관부서와 주관부서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 ⑤ 비상사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및 주관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크루가 확인할 수 있는 공유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리스크관리 대상은 비재무 리스크와 재무 리스크를 포괄한다.

3. 비재무 리스크는 다음 각 호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 ① 기술 윤리 리스크
- ② 이용자 보호 리스크
- ③ 프라이버시 리스크
- ④ 정책 및 규제 리스크
- 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 ⑥ 정보보안 리스크
- ⑦ 윤리 리스크
- ⑧ 평판 리스크
- ⑨ CI(Corporate Identity) 리스크
- ⑩ PI(Personal Identity) 리스크
- ⑪ 대외 환경 리스크
- ⑫ 인권 리스크
- ⑬ 기후변화 및 환경 리스크
- ⑭ 기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사회 및/또는 ESG 위원회가 정한 비재무 리스크

4. 재무 리스크는 다음 각 호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 ① 금리/유동성리스크
- ② 신용리스크
- ③ 외환리스크
- ④ 자본리스크
- ⑤ 재무보고 리스크
- ⑥ 내부회계 리스크

⑦ 세무 리스크

⑧ 기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사회 및/또는 감사위원회가 정한 재무 리스크

제 2 장 리스크관리 조직

제 4 조 (리스크관리 조직)

리스크관리 조직은 이사회, ESG 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책임자 (단, 제 6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리스크관리 Committee 를 구성하는 경우, 리스크관리 Committee 를 의미한다. 이하 제 6 조 제 1 항, 제 2 항 및 제 7 항을 제외하고 본 규정에서 동일하다.), 공동체법무지원실(비재무 담당) 및 재무기획실·재무회계실(재무 담당) (이하 공동체법무지원실 및 재무기획실·재무회계실을 통칭하여 "주관부서"라고 한다), 리스크관리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고 한다)로 구분된다. 해당 리스크관리 조직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조직의 설치 목적, 역할, 업무 등을 종합하여 기존 리스크관리 조직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직을 이 규정에 따른 리스크관리 조직으로 본다.

제 5 조 (이사회, ESG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1.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요인 검토, 감독 및 정책 수립 등 리스크관리 업무는 이사회가 총괄한다.
2. 비재무적 리스크의 요인 검토, 감독 및 정책수립 등 비재무 리스크관리 업무는 ESG 위원회가 총괄하며, 비재무 리스크와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 및 리스크를 수반하는 사업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3. 재무적 리스크의 요인 검토, 감독 및 정책수립 등 재무 리스크관리 업무는 감사위원회가 총괄하며, 재무 리스크와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 및 리스크를 수반하는 사업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4. 이사회, ESG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주요 결의사항 등은 「이사회규정」, 「ESG 위원회 규정」 및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6 조 (리스크관리책임자)

1. 회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종합 관리하고,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ESG 위원회를 보좌하여 전사의 리스크관리를 총괄할 책임자(이하 "리스크관리책임자"라고 한다)를 선임한다. 다만, 리스크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크관리 Committee 를 구성하여 그 역할을 갈음할 수 있다.
2.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거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①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로 하고,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2년 이상으로 한다.
 - ③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주관부서를 통해 비재무 리스크 및 재무 리스크를 관리한다.
4.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리스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이 규정에서 ESG 위원회, 감사위원회,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ESG 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5. 리스크관리책임자는 각 리스크관리 대상 유형 별로 해당 유형 리스크관리를 담당할 책임자(이하 각 "개별 리스크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6. 리스크관리책임자 및 개별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 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7. 리스크관리책임자가 선임되기 전이나 유고시에는, CEO 또는 CEO 가 지정하는 자가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대행하되, 대행자는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임원 및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리스크관리책임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크관리 Committee 를 구성하여 그 역할을 갈음할 수 있다.

제 7 조 (주관부서)

1. 전사적으로 리스크를 통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주관부서를 둔다.
2. 공동체준법지원실은 주관부서로 전사적으로 비재무 리스크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 및 ESG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체준법지원실의 업무지원을 위해 RM TF 를 구성할 수 있다.
3. RM TF 는 개별 리스크관리책임자 및 주요 소관부서 팀장을 구성원으로 한 협의체로, 비재무 리스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4. 재무기획실 및 재무회계실은 주관부서로 전사적으로 재무 리스크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5. 공동체준법지원실 및 재무기획실·재무회계실은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6.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리스크관리 현황 점검, 처리 및 대응, 리스크 통제, 리스크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 점검 등 리스크 관련 업무의 총괄
 - ② 리스크 기반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및 관리
 - ③ 이사회, ESG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리스크관리 및 대응 계획, 전략 및 정책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전사 리스크관리 문화 확산, 전파를 위한 조치의 수행, 감독
 - ④ 리스크관리 체제의 구축, 운영 및 성과에 대한 감독·지시
 - ⑤ 제 9 조에 따라 수립한 리스크관리 기본계획, 리스크관리, 회사의 주요 리스크 등에 대하여 전사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 시행
 - ⑥ 신상품, 신규 사업 등과 관련한 리스크 사항 검토

- ⑦ 리스크관리를 위한 주요 지표의 개발, 운영, 부문별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 절차의 수립, 관리 및 리스크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 등
- ⑧ 리스크관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상황의 도래, 주요사건의 발생, 주요 지표의 변동 등을 인식, 분석, 모니터링, 처리와 대응, 모니터링, 처리, 대응 및 보고
- ⑨ 이사회, ESG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지시사항의 이행, 감독
-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사전 검토
- ⑪ 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사항 등으로 이사회, ESG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 8 조 (소관부서)

1. 소관부서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관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리스크관리에 대한 1 차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
2.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이사회, ESG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책임자가 지시한 각종 리스크관리 수행 및 이에 대한 보고
 - ② 이사회, ESG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
 - ③ 소관부서의 리스크관리 담당자의 선정 및 운영
 - ④ 주관부서의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 ⑤ 해당 부문의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관리

제 3 장 리스크관리 절차

제 9 조 (리스크관리 기본계획)

1. 리스크관리책임자는 경영전략 및 정책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정책 및 계획을 이사회, ESG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가 수립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2.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이 전사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한다.

제 10 조 (리스크관리 절차)

1. 리스크관리 절차는 업무 전반에 걸쳐 리스크의 인식, 측정, 분석, 모니터링, 통제, 보고, 대응, 처리, 평가 및 사후관리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관부서는 조기에 리스크의 징후를 발견하고 리스크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리스크를 예방한다.
3. 주관부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리스크를 수반하는 모든 활동에 걸쳐 발생 가능한 중요 리스크의 발생 소재, 요인, 발생형태 등은 사전적, 사후적으로 식별한다.
4. 주관부서는 리스크관리 이행과제의 설정과 이행사항의 점검 및 리스크관리 책임자의 리스크관리 수행 업무를 지원한다.
5. 소관부서는 리스크관리 제반 규정의 준수여부, 기타 리스크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 하고 특이사항 발생 즉시 주관부서와 협의한다.
6.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주요 사항을 ESG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7.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이사회, ESG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의 이행 등을 모니터링하며 주요 현황을 보고한다.

제 11 조 (위기관리계획)

1. 이사회, ESG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는 현재 또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 관련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으로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 절한 대응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기관리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2. 위기관리계획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과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2 조 (리스크관리 시스템)

회사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 유지, 보수 및 고도화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규정의 재개정)

이 규정의 재개정은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한다.

제 14 조 (세칙)

리스크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2 년 2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